

대구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5 회 회의록

1. 일 시 : 2014 4. 18. 11:00

2. 장 소 :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실

3. 출결사항

구분	인원	성명
참석	7명	최계호위원장, 송유미위원, 김천수위원, 황금천위원, 권영을위원, 이진희위원, 박장엽위원
불참	2명	우정한부위원장, 조정연위원

4. 안 건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승인 요청 심의
- 2013학년도 대구사이버대학교 학교비 회계 결산(안) 심의
- 잉여금 처리 원칙(안) 심의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간사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한 후, 참석위원에게 개회선언을 확인하다.

- 간 사 : 대학 인사 이동에 따른 교직원 위원구성 변경 안내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다음 간서명인 지정을 요청하다.
- 송유미 의 원 : 간서명인에 김천수 위원, 황금천 위원, 권영을 위원을 추천하다
- 참석위원 전원 : 간서명인 김천수 위원, 황금천 위원, 권영을 위원에 전원 동의하다.

간서명	위원	김천수	위원	황금천	위원	권영을
-----	----	-----	----	-----	----	-----

나. 안건 1 :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승인 요청 심의’ >

- 위 원 장 : 위 안건을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간 사 :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1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학교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설명을 하다.

1.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1) 관련 법조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47조 제1항 및 제2항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2.1.26]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2) 2014학년도 학교비회계 사학연금 학교부담 예산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항목	예산	예산총액
교원	사학연금	109,503,000	221,207,000
	사학연금재해보상	7,964,000	
직원	사학연금	99,230,000	
	사학연금재해보상	4,510,000	

간서명	위원	김천수	위원	黃金京	위원	장
-----	----	-----	----	-----	----	---

- 권영을 위원 : 전년도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사립대학의 문제 중 사학연금 개인 부담부분을 대학이 부담하는 사항과 연계성이 있는지 질의하다
- 김천수 위원 : 관련 법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후 질의한 내용과는 별도 사안임을 답변하다.
- 참석위원 전원 : 각 위원이 관련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학년도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2014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승인」에 대해 찬성 의결하다

다. 안건 2 : < '2013학년도 대구사이버대학교 학교비 회계 결산(안) 심의' >

- 위 원 장 : 위 안건을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천수 위원 : '2013학년도 대구사이버대학교 학교비 회계 결산보고를 자금계산서 총괄표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1. 총괄

(단위:원)

예 산 액	결 산 액	증 감(△)	비 고
14,938,397,000	15,173,136,586	234,739,586	

2. 수입부

(단위:원)

관 별	등록금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제거)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결산액	예산액	증감(△)
등록금 수입	9,686,041,546	0	0	9,686,041,546	10,001,760,000	△315,718,454
전입 및 기부수입	1,486,497,830	21,140,000	0	1,507,637,830	1,212,920,000	294,717,830
교육부대수입	214,988,624	0	0	214,988,624	211,160,000	3,828,624
교육외수입	285,253,346	151,622,588	0	436,875,934	436,175,000	700,934
투자외 기타자산 수입	0	0	0	0	2,500,000,000	△2,500,000,000
고정자산매각수입	230,000	0	0	230,000	0	23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292,403,757	34,958,895	0	3,327,362,652	576,382,000	2,750,980,652
자금수입의 총계	14,965,415,103	207,721,483	0	15,173,136,586	14,938,397,000	234,739,586

간서명	위원	김천수.	위원	황금호	위원	최
-----	----	------	----	-----	----	---

3. 지출부

(단위:원)

관별	등록금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제거)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결산액	예산액	증감(△)
보수	4,542,482,539	0	0	4,542,482,539	5,249,903,000	△707,420,461
관리운영비	1,628,202,910	0	0	1,628,202,910	2,247,708,000	△619,505,090
연구학생경비	3,588,289,282	8,440,000	0	3,596,729,282	3,591,047,000	5,682,282
교육외비용	11,718,520	0	0	11,718,520	22,000,000	△10,281,480
예비비	0	0	0	0	250,000,000	△250,000,000
투자외 기타자산 지출	0	0	0	0	2,000	△2,000
고정자산매입지출	640,697,766	0	0	640,697,766	3,519,262,000	△2,878,564,234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554,024,086	199,281,483	0	4,753,305,569	58,475,000	4,694,830,569
자금지출의 총계	14,965,415,103	207,721,483	0	15,173,136,586	14,938,397,000	234,739,586

- 참석위원 전원 : 각 위원이 관련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결산 내용을 검토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대구사이버대학교 ‘2013학년도 대구사이버대학교 학교비회계 결산(안)’ 이 타당하다는 의결에 합의하다.
- 위 원 장 : ‘2014학년도 학교비 회계 자금예산(안)’ 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하다.
- 김천수 위원 : 제청하다.
- 참석위원 전원 : 찬성하다.
- 위 원 장 :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2013학년도 대구사이버대학교 학교비회계 결산(안)’ 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안건 3 : < ‘잉여금 처리 원칙(안)’ 심의 >

- 위 원 장 : 위 안건을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간 사 :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잉여금 처리 원칙’ 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설명을 하다.

간서명	위원	김천수	위원	황금영	위원	최
-----	----	-----	----	-----	----	---

【이월금 처리기준】

○ 결산 시 사고·명시·기타이월의 구분 명확화

구분	의미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기타이월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

※ 이월 구분별 예시

구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타이월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연 · 국고사업비 잔액 · 계속성사업 · 임대보증금 · 퇴직금 지급 예상액 · 장학금 미집행액(차년도 장학금 지급 시) · 계획변경(취소 제외)에 따른 이월액 <p>※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그 사유는 유사하나, 그 사유 발생 시점(예산편성 후, 지출원인행위 후 등)에 따라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법인세 · 국고사업비 잔액 · 평생교육원 운영이월액 · 비용집행 지연 · 절차 지연 · 소송 발생에 따른 이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절감 · 사업취소 · 불용액 등

○ 이월금에 관한 사항(이월금 발생 사유별 구분을 명확히 하였는지 여부, 기타이월금 최소화 등) 철저히 검토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잉여금 처리 원칙 마련(사립대학제도과-5888, '13.9.30.)

- 등록금회계 예산 집행 후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처리 원칙을 본예산 편성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마련

*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과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이 (등록금회계의 전기이월자금을 한함)

※ (예시) 등록금회계의 잉여금을 직접교육비에의 활용,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인하 부문에 사용 등

- '잉여금 처리 원칙'을 공시할 것('14 상반기 대학정보공시지침에 포함 예정)

-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잉여금은 처리원칙에 따라 사용

간서명	위원	김진우	위원	황순영	위원	[서명]
-----	----	-----	----	-----	----	------

- 권영을 위원 : 전년도 결산총액 대비 이월금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다.
- 김천수 위원 : 우리대학의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지난 2011.11.01.자로 정이사가 선임되면서 1994년부터 이어진 임시이사 체제가 종결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 되었으나 이사회구도가 양측으로 갈려 대립이 심화되어 이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2012학년도 ~ 201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지 못하면서 각종 중요 대학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많은 자금이 이월처리 되었다고 설명하다.
- 간 사 : 아래와 같이 ‘잉여금 처리 원칙(안)’ 을 설명하다.

【잉여금 처리 원칙(안)】

○ 등록금 회계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대학이 추진하는 중요사업 중 학생복지 향상과 관련된 학생지원사업 및 장학금 확대 등의 재원으로 우선하여 사용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참석위원 전원 : 각 위원이 상정 안건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대구사이버대학교 ‘잉여금 처리 원칙(안)’ 이 타당하다는 의결에 합의하다.
- 위 원 장 : ‘잉여금 처리 원칙(안)’ 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하다.
- 김천수 위원 : 제청하다.
- 참석위원 전원 : 찬성하다.
- 위 원 장 :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잉여금 처리 원칙(안)’ 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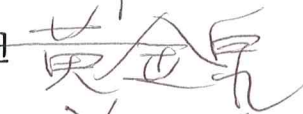


간서명	위원	김천수	위원	黃金京	위원	
-----	----	-----	----	-----	----	--

< 폐회 선언 >

이상과 같이 회의를 마치고 최계호위원장이 12시 15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 함.

2014년 4월 18일

위원장	최계호	
위원	송유미	
위원	김천수	
위원	황금천	
위원	권영을	
위원	이진희	
위원	박장엽	